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시민

김 준 식 (사단법인 아시안 프렌즈)

1. 다문화 사회의 배경 세계화
   1)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
   2) 세계의 이주자 현황
   3) 한국의 이주자 현황

2. 한국 내 이주자들의 어려움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새터민
   1) 외국인 근로자
   2)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
   3) 난민
   4) 탈북자(새터민)와 그 자녀들의 어려움

3. 국제법으로 본 이주자의 권리
   1) 세계 인권선언
   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3) UN아동권리협약

4. 한국 정부의 외국인정책
   1) 의미 있는 세 가지 사건
   2)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위원장: 국무총리)
   3) 한국의 외국인 지원기관과 단체

5. 이제는 단일민족 폐쇄적 민족주의 벗어나야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시민

김 준 식 (사단법인 아시안 프렌즈)

1. 다문화 사회의 배경 세계화

1)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세계화는 인류의 삶의 환경을 국민국가 영역에서 세계로 넓혔다. 아직도 절대 다수의 빈곤국과 세계 도처에 소수민족들은 세계화와 먼 거리에서 살아가지만 그들 또한 세계화의 영향 하에 살아가고 있다. 즉 세계화란 70억[1] 인류 모두의 삶의 터전이 국가나 민족, 단일 문화권의 영향을 벗어나 다민족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물질, 돈, 정보 그리고 문화도 이제는 국민국가나 단일민족의 국경 안에 묶어 둘 수 없을 뿐더러 국가는 더 이상 우리가 지켜야 할 절대 절명의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 평화, 자유, 인권, 원조, 지속 가능성,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이 중요한 시대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국경을 지켜야 할 필요도 국산품을 애용해야 할 애국심도 강요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는 지속가능한 자연환경과 평화로운 문명을 만들어 가야 하기에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구촌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지구촌 시민의식 즉 보다 가까워진 지구촌의 시민의식이란 지구촌 자연과 지구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즉 내나라 땅, 내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이 지구촌 전체를 사랑하고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지구촌 시민의식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인류 문명은 자연을 파괴하는 역사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민족 간, 문명 간의 갈등의 역사였고 그런 문화는 이 지구촌에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지구촌 인류 중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대부부의 이주자들)에 대한 우리의 배려는 최우선의 지구촌 의제이다.

---

1) As of 8 September 2010, the world population is estimated by the United States Census Bureau to be 6.867 billion

2) 세계의 이주자 현황

이주의 원인은 다양하다. 첫 번째 세계화와 빈곤은 중요한 이주의 원인이다. 세계화로 인해 국민국가시대의 국경은 무너졌고 이 열려진 국경은 자연스럽게 돈, 상품, 문화와 함께 노동력을 빈국에서 부국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이주 노동력의 형식은 단순 근로자, 결혼이민자, 다국적기업 해외근무자, 전문 근로자, 국제기구근로자, 관광객, 그리고 이민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두 번째 이주의 원인은 환경파괴이다. 세계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대규모 자원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자연환경의 파괴, 지구온난화, 사막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환경난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세 번째 이주의 원인은 정치 갈등, 종교분쟁, 내전이다. 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냉전시대는 끝나가지만 대신 국지전과 내전, 정치, 종교적인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많은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네 번째는 선진국의 저 출산 고령화와 빈국들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일자리 부족현상이다. 선진국들의 경제성장과 노동자들의 3D업종 회피는 자연스럽게 가난한 나라 노동력을 불러 드린다. 선진국들의 출산율은 1% 대로 낮아진 반면(2009년 5월 현재 한국의 출산율 1,2%) 가난한 나라들의 인구증가는 매년 7000 - 8000 천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국제이주기구(IMO)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의 이민자 수는 1970년 8200만 명에서 2000년 1억 7500만 명으로 늘었고 2005년에는 1억 9000만 명이었다가 2009년 현재는 2억 1000 만 명으로 늘어났다. 2009년 기준으로 이들 이민자들은 세계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리고 이들 이민자 중 60%는 유럽과 미국 등 부국에 집중되고 있다.

3) 한국의 이주자 현황

우리 한국인도 조선말과 일본 식민지 시대에는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하와이와 일본으로 이주를 하였고 1960년대 초에는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되어 이주를 하던 시절이 있다. 또한 1970년대에는 비록 한국기업의 해외 파견 근무 형식이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우디와 중동지방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였다. 심지어 1980년대 초 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 호주,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었다. 또 해방 이후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우리의 딸들은 주한 미군들과 국제결혼을 선호 하였고 이들 중 상당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주를 하였다.

그런데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도 올림픽 게임의 성공은 아시아 개도국들에게 한국이 잘사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고[2]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각인 시켰다. 그리고 1986년과 1987년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진전으로 한국 내 노동자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함으로서 이때부터 한국 노동자

2) 1989년 한국의 GNP 5418 달러(기본 생존권이 해결되는 선)

들은 힘들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회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7년부터 필리핀 출신 가정부들이 서울 강남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재중 중국동포들의 모국 방문과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노동력 수출국에서 노동력 수입국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외국 인력 유입 원인은 생산직종의 단순노동력 부족, 국제결혼의 증가, 동포에 대한 문호 개방,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등이다.

제도도입시기	이주자 관련 주요제도 변천 과정
1991. 11.	•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 도입
1993. 12.	•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2000. 4.	• 연수취업제 시행(연수 2년 + 연수취업 1년)
2002. 2.	• 연수취업제 보완(연수 1년 + 연수취업 2년)
2002. 11.	• 취업관리제 도입(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취업)
2004. 8. 17	• 고용허가제 시행(취업관리제는 고용허가제 특례제도로고용허가제에 통합)
2007. 1.	•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2007. 3.	• 방문취업제 시행(특례고용허가제를 확대하여 국내에 연고가 있는 외국국적 동포뿐 아니라 무연고자도 취업 가능)
2007. 5.	•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시행
2008. 6.	•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국제 결혼중개업을 신고제로)
2008. 9. 22	• 다문화 가족 지원법 시행
2009. 12	• 다문화통합기본법(국회에 제출)

한국의 경우 1991년 11월에는 한국 해외투자기업들이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3] 라는 명분을 달아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소위 3D업종에 투입하여 저임금, 장시간 일을 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연수생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물론 아무런 사회 안전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연수생들은 사업현장을 이탈하여 보다 대우가 좋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미등록자(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였다.

3) 산업 연수생제도는 송출비리, 인권침해,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들음.

체류외국인 증감추세(법무부 2011, 1 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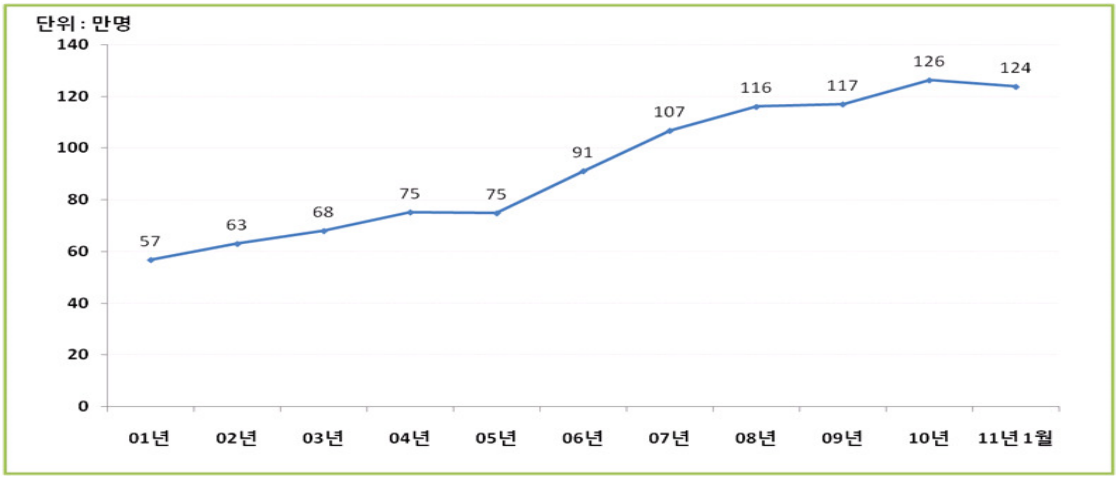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0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총 체류외국인은 1,261,415명으로 2009년 대비 8%가 증가 하였다. 이중 결혼이민자는 141,654명으로 2009년 대비 13%가 증가하였고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은 69,600으로 14%가 감소하였다.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557,941명이었으며 이 중 이국인노동자로 불리는 단순기능인력은 513,621명이다. 또 국내 총 체류자 중 미등록자(불법체류자)는 168,515명으로 전년대비 5,6%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수에서는 아직 미미하지만 이주자 중 난민들도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5월 31일 현재 국내 난민 신청자는 2,915명 난민 인정 자는 222명이다.

한국내 외국인 체류현황

[법무부 2010. 12. 31] (단위/명)

한국 내 총 체류외국인	1,261,415 (전년대비: 8%증)	비 고
90일 이상 장기체류자	1,002,742	등록외국인 918,917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258,673	
취업자격체류외국인(방문취업자 포함)	557,941 (−1,4 %)	
취업목적입국자중 단순기능인력	513,621 (−2,2 %)	
결혼 이민자 합계	141,654 (13 %)	여85%, 남15%
유학생(어한연수생 포함)	69,600 (−14 %)	
미 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	168,515 (−5,6 %)	
난민신청자(10, 5,31)	2,915 (12,6 %)	
난민 인정자(10, 5 31)	222	2010년 47명 인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2010, 8)	19,535(2010년 8월)	매년 3000 명 증가
영주자격소지자(07,12)	16,460	

국적취득자	73,725	2010년취득자 16,312
외국인주민자녀(09, 7.행안부)	107,689	
18세 이하 이주아동 체류자 (2009, 3, 말. 법무부 국회답변)	50,787	
0세-24세 미 등록 아동, 청소년 (2009, 3, 말. 법무부 국회답변)	22,092	

한국 정부는 이주자 중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2004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업연수제와 통합 운영하여 공식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4년에는 '제외동포취업관리제'를 실시하여 재중,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07년 3월 4일에는 '방문취업제'로 전환하여 동포들의 한국 내 취업활동의 폭을 넓혔다.

여기에 더하여 외국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다문화 가족으로 분류되는 북한 이탈민의 수는 2010년 2월 현재 19, 535명에 달하고 매년 3000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청소년들의 수도 약 1000 명이나 된다.

국내 거주외국인 중에 90일 초과 국내거주 외국인주민(국적취득자, 불법체류자 포함)은 1,002,742명으로 인구의 2 %에 해당한다. 이중 주요관심 및 지원대상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국제결혼이주자 및 혼인귀화자) 및 자녀, 난민, 북한이탈주민은 785,414명이다. 나머지 38%는 유학생, 전문취업자, 외교관 상사주재원 등이다.[4)]

외국인 이주자 중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대상 중 하나는 바로 이주청소년들이다. 2009년 3월 말 현재 0세에서 24세까지 국내체류 외국인 아동, 청소년 수도 199,336명이다. 이중 18세 이하 아동 수는 50,787명이다. 그리고 초, 중등 학령기인 6세에서 18세 아동은 34.402명이다. 이중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 비율 77.2%를 적용할 경우 학령기 장기 체류 외국인 아동의 수는 26,558 명이다. 이중 한국 내 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8,606 명(외국인학교 재학생 7,397[5)], 국내학교 외국인 재학생 1,209명[6)])이니까 17,950 명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거의 개도국 출신 외국인 아동 청소년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7)]

한국 정부는 UN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이들 이주 아동들은 국적과 신분의 관계없이 자국의 아동들과 동등하게 교육, 복지의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2009년 4월 20일 청소년단체와 이주자지원단체 그리고 법조 단체가 연대하여 '이주아동,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대표 김준식)'을 결성하여 관련 법률 검토와 새로운 법률 -이주아동권리 보장법-

4) 2009, 7. 행안부.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5) 2009년 3월 말 교육부가 국회(김동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6) 2007, 6, 5. 교육부 정책홍보담당관실 '2007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계획 발표'

7) 2009년 3월 말. 법무부가 국회(김동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초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상정에 놓은 상태다.

참고로 한국 재외동포는 현재 700 만 명이다. 그 중 400 만 명은 외국국적 동포이고 150 만 명은 외국영주권자이고 150 만 명은 일시체류자 유학생 등이다. 이들은 일제강점, 군사독재통치 등과 같은 우리역사의 어려운 시기에 고국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넓은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펼쳐가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외에서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2007년 현재 33만 명(미국에만 20 만 명)이나 된다. 이들은 주로 미국, 일본, 필리핀,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체류하고 있다.[8)]

2. 한국 내 이주자들의 어려움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새터민 –

1)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문제는 주로 생산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아래와 같다.

–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문제의 경우, 장기간 체불되는 경우 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사례들도 있다.

– 산업재해: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3D 업종, 미등록 영세사업장, 공해유발사업장 등인 경우가 많아 제대로 안전교육을 못 받을 뿐더러, 안전시설이 미미하다. 의사소통이 안 되어 위험상황이 발생해도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미 가입, 공상처리 등으로 제대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폭행: 전근대적 노사관계, 가난한 나라 출신에 대한 인종차별, 거친 현장문화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인 사업주나 한국인 근로자들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사업장 변경: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며 계약해지,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상해 등의 사유에 한해서 총 3회 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 회수 제한 없음) 이에 따라 회사 혹은 동료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나 마찰,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불만이 있다고 해도 사업주가 동의해 주지 않는 한 사업장을 옮길 수가 없으며, 임의로 사업장을 변경하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다.

– 의료: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을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불법체류자는 보험혜택이 안되니 의료비 부담이 크다. 정기적 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진료를 받지 않아 병을 키워 심각한 상태에 이르

8) 내일신문. 2008년 10월 7일. '외교통상부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인용

기도 한다.

– 문화적 차이: 국내 외국인근로자들의 출신국은 100여개에 이른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 관습,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 나라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음식, 술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사업장 이탈이나 다툼, 한국의 이미지 실추 등과 연결되기도 한다.

– 기타: 범죄피해, 교통사고, 사기, 성폭행, 사망, 임대차 등의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9)]

2)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

– 언어: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 전부터 언어교육을 받거나 한국어능력시험을 보는 것과 달리, 결혼이민자들은 언어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며 입국해서도 무관심, 외출금지, 교육기관 부족 등의 이유로 교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저학력자나 문맹자들의 결혼이민이 늘어나고 있어 교육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빈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 가정의 52.9%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났다. 남자가 제대로 된 직업이 없으면서 외국인 아내에게 억지로 일을 강요하여 돈벌이를 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 폭력: 빚까지 내가며 결혼비용을 들여 결혼을 하는 남편과 시댁은 여성을 돈 주고 사왔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과 폭력으로 연결된다. 폭력은 성적인 학대가 동반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냥 참고 지내거나 소수의 피해여성들이 이주여성단체의 보호를 받는다.

– 자녀: 국민 여덟에 하나는 국제결혼이다 보니 이제 베트남, 필리핀, 태국인 엄마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인 아빠를 둔 자녀들이 태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일명 '코시안'이라 불리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학습장애,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2009년 5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75명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정도를 검사한 결과, 전체의 75%인 56명이 또래보다 낮은 언어 수준을 보였다.

– 체류: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전에 결혼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면 체류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남자에게 있다는 걸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은 국제결혼이민자들의 어려움은 한국인배우자나 중계업자들의 잘못된 결혼알선과정에서 기인하는데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배우자에게 안정된 주거와 생활 여건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국제결혼의 경우 가족초청 비자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 교수는 "영국, 프랑스, 독일

9) 정부는 2009년 현재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키르키스탄, 파키스탄. 15 개국과 MOU를 체결하고 노동력을 받아들인다.

등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안정된 주거와 생활 여건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선 배우자에게 가족초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면서 "중개업체가 알선하는 국제결혼이 성행하는 한국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위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10)]

3) 난민(refugees)

– 직업, 노동: 난민신청인들의 본국에서 직업은 학생, 교사,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했던 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제조업 공장노동자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21.4%는 현재 무직이고 61.4%는 3번 이상 일자리를 옮기는 등 불안한 경제상황이며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한 구직의 곤란을 들었고, 난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해고와 임금삭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 의료, 주거: 20%가 신체건강에 대하여, 41.4%가 정신건강상태에 대하여 좋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협약난민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난민신청인의 경우 14.5%만 직장의료보험이나 민간단체운영의 의료공제회에 가입하였다. 주거는 41.4%가 공장 등에 딸린 기숙사나 공동숙소를 이용하고 있다.

– 일상생활의 어려움: 날씨, 음식, 의복, 주거, 건강, 의료, 의사소통, 교육, 가족결합, 혼인문제, 개인 신변의 안전, 불안정한 지위(강제송환의 두려움),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부족, 인종차별, 문화적 차이 등 일상생활의 문제들 가운데 난민신청인이나 협약난민은 공히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변하였고 다음으로 난민신청자들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지위, 협약난민들은 교육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 가족결합: 응답자의 21.4%가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가족이 본국이나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나머지 경우는 그 중 78.2%가 한국에서의 가족결합을 원하고 있었다.

– 정부의 사회적 지원: 정부에 바라는 사회적 지원으로 난민신청인들은 법률지원과 의료를, 협약난민의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교육문제를 들었고, 양자 공히 그 다음은 주거지원의 문제였다.[11)]

– 자녀 신분과 교육문제: '난민인권센터'(대표 홍세화)는 2008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17살 미만의 미성년 난민이 모두 81명(난민 신청자 65명, 인정자 16명)이 며 이들 중 상당수가 무국적자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34.7%인 28명(난민 신청자 23명, 인정자 5명)은 4살 미만의 영유아·신생아였으며 예방접종·분유·기저귀 등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시흥)

---

10) 설동훈. '다문화가족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2008, 9, 9. 세계일보기사에서 인용

11) 이호택 피난처 대표. '재한 난민의 인권실태' 2008, 7, 15. 서울지방변호사회 난민세미나 자료.

4) 탈북자(새터민)와 그 자녀들의 어려움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착지원 대책은 여러 가지 부족하다. 그들이 한국 땅에서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 빈곤: 새터민 가정의 31.7%가 실업자이며 40%가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 학업 부적응: 새터민 청소년들은 북한 교육의 낙후성과 탈북과정의 유랑생활 등으로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 주고 있다. 교과부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를 보면 새터민 자녀의 초등학교진학률 85.7%, 중학교 진학률 49.1%, 고교 진학률 14.5%로 나타났다.
- 가족문제: 무지개 청소년센터가 2007년 북한 이탈 청소년 613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보호자 없이 혼자 입국한 청소년이 31.8%이며 부모와 동반 입국한 청소년 중 현재 69% 만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11%는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이 되었다.
- 건강과 심리적 결핍: 북한에서 영 유아기의 영향결핍으로 신체 발육 부진 및 면역성 약화를 경험하고 유랑생활에서 수난을 겪으면서 건강이 많이 피폐해져 있다.
-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이들은 남한 사회에서 '빨갱이'로 '사회 부적응자'로 '불쌍한 아이'로 취급되어 심한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위축감을 가진다.[12)]

3. 국제 법으로 본 이주자의 권리

국제법으로 채택된 모든 규정은 곧 인류사회 전체,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이주자와 관련된 중요한 국제협약은 '세계인권선언'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UN아동권리협약'이다.

1)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총회는 50년 전인 1948년 12월 10일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방파제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세계 역사 중에 가장 비참한 희생을 불러왔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채택된 이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정리한 최초의 기록이다. 또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적용된다는 내용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문서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명확하고 간결한 30개 조항으로 다양한 인권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처음의 두 조

12) 이수정, '한국 내 북한 이탈청소년의 현황과 정책 과제', 무지개 청소년센터, 2008. 6. 25.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항에서 인권에 대한 보편적이고 확실한 정의를 하고 있다.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상기와 같은 일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제법이나 협약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제시하지 못한 점, 시민·정치적 권리에 비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 등이 그 한계이다.

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UN은 1990년 12월 18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미발효 / 당사국 수 15 / 대한민국 미가입)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의 기본적인 문서, 특히 세계 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담긴 원칙들과 국제노동기구 체재 내에서 만들어진 관련 문서, 인권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및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 및 기타의 국제기구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하여 달성한 업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역적 내지 양자 간 단위를 기초로 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대하여 일부 국가들에 의하여 달성된 성과는 물론, 이 분야에서의 양자 및 다자협정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정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관련되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주현상의 중요성과 정도를 실감하면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명문화 시켰다.

이 협약 1조에서는 '이 협약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한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된다.'라고 정의하고 그 제7조에서는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 권한 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해 놓았다.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이주자의 권리는 생명보장권, 노동권, 종교 선택권,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

호, 재산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재판권, 거주권과 강제 추방 방지, 노동조합을 비롯한 단체 참여권, 취업 및 직업 선택권, 자녀 교육권, 문화 향유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 담임권, 공정한 납세권 등 모든 권리의 보장을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그 제87조에서 '1.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이후 다음 달의 첫째 날부터 발효한다. 2. 협약 발효 후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다음 달의 첫째 날부터 발효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놓아 아직 발효되고 있지 못하다.

3) UN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은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협약 제2조에서는 1.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 보장한다. 2.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 한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1.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 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한다.

이상과 같은 국제법에 대해 한국 헌법 제 6조 2항에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도 UN의 이(본 or 위의) 이주민협약과 UN아동권리협약에 상응하여 외국인과 그 가족, 특히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4. 한국 정부의 외국인정책

1) 의미 있는 세 가지 사건

지난 몇 해 우리의 외국인 정책에 영향을 준 세 가지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다.

그 하나는 2005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된 프랑스 소요사태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그해 10월 27

일 프랑스 파리 교외 클리시-수-부아에서 부나 트라외게와 제드 베나라는 소년이 감전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축구를 한 뒤 라마단에 참여 하기위해 집으로 뛰어가던 그들을 경찰은 범죄자로 오인해 추적했고, 놀란 아이들은 경찰을 피해 전봇대에 올라갔다 변을 당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3일 뒤부터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은 200개 도시로 번져 3주일이나 계속됐다. 1만여 대의 차량이 파괴되고 2억 5천만 유로(약3천억 원)의 재산피해를 낳았다.(한겨레 06.10.27)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이웃 나라 벨기에와 독일로까지 번져 나갔다. 프랑스 정부는 68혁명 때도 하지 않았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000명을 체포했다. 그 가운데 600명 정도를 수감한 뒤에야 치안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 소요 사태의 이면에는 그 동안 백인 프랑스인들에 비해 교육 복지 노동 등 모든 면에서 차별받아 온 프랑스 이주 노동자와 그 자녀들의 불만이 있었고 최근에는 백인들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청년 실업이 그 근본 원인이었다. 유럽 각국은 1960년대부터 경제가 발전하면서 제조업이 쇠퇴하게 되었고 이렇게 쇠퇴해 가는 제조업 분야의 힘든 노동을 값싼 이주 노동자들이 채워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유럽 각국은 현재 전 국민의 10%내 외의 외국계 이민자들이 살게 되었고 그들은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아 왔던 게 사실이다.

또 하나의 사건은 2006년 초 미국의 풋볼게임 스타 하인스 워드의 한국 방문이다. 2006년 4월 미국 프로풋볼(NFL)리그 2006년 MVP인 한국계 스타 하인즈 워드 (30·피츠버그 스틸러스)가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그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가난한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한국적인 가풍으로 자랐으면서도 미국이란 기회의 땅에서 미국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는 자라는 동안 두 가지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정체성의 갈등을 겪기 보다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예절 바르고 겸손하면서도 굳은 의지를 키워냈고 마침내 성공하여 미국인이 열광하는 풋볼게임의 스타가 되어 그의 어머니의 나라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그는 한국을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고 각계의 인사들을 만나면서 온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혼혈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을 한꺼번에 바꿔놓았다.

세 번째 사건은 美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이다.

「지난 2007년 4월 버지니아 공대에서 미국 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범인이 한국계 미국인 조승희(23)씨 라는 사실은 한인 사회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버지니아 공대 4학년이었던 조씨는 기숙사와 강의실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했으며 이로 인해 교수 5명 등 총 32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당했다. 조 씨 자신도 범행 후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8세부터 미국에서 산 이민 1.5세대로 정신 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이민자 소외문제와 총기 규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왔으며 미 상.하원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가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총기 구입자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07, 1, 16. 2007년 10대 뉴스)

상기 세 가지 사건은 서로 다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각을 주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특히 앞의 두 가지 사건은 한국정부의 외국인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국내 외국인 정책과 관련 "점차 우리 이민법을 완화해 한국에 와서 오래 노동하고,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새로 다듬어 준비하고 있다" 고 하였고 이어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했으며 2006년 5월 26일『외국인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최소한 2004년까지는 외국인 정책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국내 거주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한국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무정책으로 갈 수 없게 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외국인정책을 세우게 된다.

2)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위원장: 국무총리)

정부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06년 5월 26일 제1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면서「외국인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라는 정책안을 만들었다.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하고 외국인정책 기본원칙을 세웠다.

□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구 분	현 재	미 래
정책기조	국익우선, 통제중심	국익과 인권보장 균형
외국인처우	일시활용대상	더불어사는 이웃
관련법령	개별법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제정
추진체계	소관부처별	총괄추진 시스템 구축
정책평가	단편적, 비체계적	정책 품질관리

기본원칙으로는 외국인인권보장, 국가경쟁력 강화, 다문화포용과 사회통합으로 정한바 있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초「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을 발의 하여 2007, 5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둘째,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 등 외국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셋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 정주하는 외국인들의 사회적응

교육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해 정부는 교육·홍보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화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였다.

3) 한국의 외국인 지원기관과 단체

한국내 공공기관이 설립한 외국인이주자지원센터는 2011년 9월 현재 노동부지원센터 8개(서울, 안산, 의정부, 김해, 창원, 마산, 인천, 천안), 여성가족부 지원센터 7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00 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외국인 지원센터 14개(서울글로벌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등)가 있고 계속 새로 설립되고 있다. 이 중 제일먼저 설립된 공공센터는 2001년 12월 14일 서울시가 지원하고 성동구가 설립하여 (사)세계선린회가 위탁 운영하는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이다. 이러한 외국인지원센터들은 최근 '한국외국인지원단체 협의회(초대회장 김준식)를 설립하고 운영, 프로그램 개발, 이주자 인권보호운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센터는 80년대 후반 성남 주민교회를 시작으로 주로 민중교회 젊은 성직자들이 시작했다. 지금도 종교기관이 후원하는 센터가 대부분이며 2010년 현재 민, 관이 운영하는 외국인지원기관, 단체는 743개(시군구별 평균 3.2개)로 '08년(564개)에 비해 179개(31.7%) 증가하였다.

전국의 외국인지원기관, 단체 현황

계	공공기관	종교단체	민간단체	비 고
743	304	87	352	

자료: 행정안전부, 「200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2009, 7

이들 단체나 기관의 형식은 외국인이주자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의 형식과 교회나 사회단체 등이 단체사업 중 일부사업으로 외국인이주자지원 사업을 하는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 내 정부 및 민간단체가 설립한 외국인 이주자지원기관들의 사업은 대게 외국인생활안내, 상담, 한국어교실, 무료진료, 문화교류, 직업교육 등이 주류이며 몇 몇 센터는 외국인청소년교육, 국제연대 사업, 장례식 지원 사업 등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최근 노동부 지원으로 설립된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감독아래 고용허가제 사후 관리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기도 했다.

이중 외국인 노동자운동단체들(외국인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은 외국인노동운동 및 소수자 권익보호 운동의 성격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몇 개의 단체는 결혼이민자 권익 주창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정착하지는 못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조직

(서울 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 산하 이주노동자 운동 조직(성서공단 노동조합, 삼우정밀지회/한국보그너씨에스분회/평택・안성지역일반노동조합노동조합)도 있다.

(사)아시안프렌즈는 2011년 10월부터 한국다문화교육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인들을 위한 「다문화사회교육」강사은행(관련 학자와 단체 대표 50 명)을 조직하고 각급 교육기관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강사파견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5. 이제는 단일민족 폐쇄적 민족주의 벗어나야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는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삼성경제연구소)에서 최근 유전자 연구에 따르면[13] 우리 민족의 기원은 남방계 30-40%, 북방계 60-70%의 혼혈민족이라며 생태학적 차원에서 생명의 진화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줄곧 다양해지는 방향으로 달려왔다고 했다. 그는 섞여야 건강하고 섞여야 아름답다고 하였다. 그래서 혼혈민족 여인들이 훨씬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했다. 이는 미스유니버시아들의 대다수가 혼혈인 것으로 증명된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다양하지 못해 늘 전염병 앞에 등잔불처럼 살아가야 하는 단일민족이 아니라 정력적이고 아름다운 혼혈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려면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단군이래 5000년 단일민족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은 족보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의 대부분의 성씨는 중국에서 유래했다." (김기봉, 2007, 9) 역사적으로 볼 때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한반도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정착했다. 8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성씨 275개 중 136개가 귀화 성씨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일민족이다'라는 명제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신화인 것이다.[14]

이제 우리는 폐쇄적 국수주의나 왜소한 민족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는 고조선과 찬란했던 역사로 기억되는 고구려, 발해, 고려등도 위만, 말갈과 예맨, 옥저, 거란 등 중국의 다 종족들과 수많은 변방 족속들을 받아드리고 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고구려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불교와 다종교를 수용하여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을 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폐쇄적인 혈통집단들의 경직된 서열을 전제로 한 골품제를 주축으로 유지해온 신라나 백제는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 들 수밖에 없었음을 역사의 교훈으로 받아드려야 한다.[15]

최 교수는 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보다 노동인구의 이민을 좀 더 자

---

13) 단국대 김욱교수 연구진, 서울대 이정선 교수, 한림대 김종욱 교수의 Y염색체 DNA와 미토콘드리아DNA를 분석한 결과

14) 김연권 2008. 8,8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 경기도 다문화센터 제1기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직무연수 자료집

15) 박노자. 2002, 2, 21 '당신들의 대한민국' 120-123 쪽. '한겨레신문사'

유롭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민 인구는 상대적으로 젊은 데다 제1세대 이민 여성들의 출산율 역시 높고, 미국이 선진국들보다 고령화의 충격에 덜 흔들리는 까닭은 일찍부터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007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서는 "한국이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는 그 영토 내에 사는 서로 다른 민족. 국가 그룹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 '순수혈통'과 '혼혈'과 같은 용어와 그에 담겨있을 수 있는 인종적 우월성의 관념이 "한국사회에 여전히 퍼져 있다는데 유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위원회는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 그룹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들을 초, 중등학교의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과 이주노동자와 혼혈아 등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제거하는 한편 다른 민족이나 국가 출신자들이 조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북유럽 국가들이 중점을 두는 국민교육의 목표는 상이한 민족들 간에 다양한 다문화족 상호교류를 촉진하며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시민의식을 강화해 주는데 있다. 오늘날 모든 나라의 공통된 교육적 사명은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이다.[16]

한국은 2018년이면 65세 인구가 14.3%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2050년에 이르면 38.2%까지 진입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에 앞서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연령대로 보는 25세에서 54세까지의 노동력은 당장 2009년부터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 우리국적 이탈, 상실자가 귀화 국적회복자 보다 많은 인구 순 유출국이다.[17]

이제 이러한 고령화 사회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외국인인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18]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변화 추이(통계청.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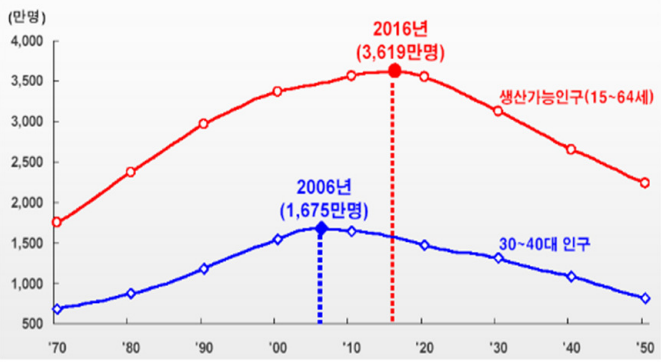

16) 이르끼 이에스 핀란드 민족고등학교연합 사무총장 '성인교육', '핀란드 경쟁력,(서울: 영신사, 2010), p 236.

17)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해외 현지유학생 현지취업 등으로 지난 10년 간(98-07) 108,973 명의 인구 순 유출이 발생했다.

18) 삼성경제연구소. 2007.8 '한일 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Seri.org

UN(2001)도 한국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민 수요를 6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최대가 되는 2020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50년 동안 한국 전체 인구의 약 14%(643만 명)를 해외이민을 통해 받아드려야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19)]

한국의 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외국노동인력분석 보고서'에도 외국인 인력비중을 늘리면 한국인 고용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GDP도 증가 한다고 발표하였다. 즉 외국 인력 비중이 2%, 4%, 6% 수준일 때 경상 GDP는 각각 0.24% 포인트, 0.297% 포인트, 0.304% 포인트 증가하고 총고용도 0.370%, 0.391%, 0.407% 늘어나 외국인 인력 1인당 연간 GDP에 기여하는 가치는 260만원이 늘어난다고 하였다.[20)]

이제 세계는 달라지고 있다. 케냐계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버락 오바마가 인종적 편견의 장벽을 뚫고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대이변이 일어났다. 사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였으나 여태까지는 소위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s)으로 불리는 백인들에 한해서였다.

프랑스는 어느 나라보다 타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나라이지만 2007년 헝가리계 이민 2세인 니콜라 사르코지가 대통령이 되었다. 더욱이 어머니가 그리스계 유태인이라는 점이 세계를 더욱 놀라게 했다. 그는 엘리트 정치인 양성소인 그랑제콜이 아닌 일반대학인 파리10대학 출신 변호사이다.

영국에서도 정치적으로 2등 국민인 스코틀랜드 출신의 고든 브라운이 수상으로 선출되었었다.

세계미술시장에서도 아시아계 작가의 작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주요 문학적 모티브로 술시르 글레지오(불)가 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21)]

---

19) 매경 이코노미. 1446 호. 08, 03, 12. '체류외국인 100만 명시 대' 재인용.

20)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력 노동시장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2007, 9.

21) 삼성경제연구소. 2009.1.7 "2009년 해외 10대 트렌드"에서 인용

국가별 국제개발협력 기여지수 2009

평가항목 원조(Aid), 무역(Trade), 투자(Investment), 이주자(Migration), 환경(Environment), 안전(Security), 기술(Technology)			
국 명	종합지수	한국의 항목별 지수	
스웨덴	7.0	종합지수	2.8
덴마크	6.7		
네덜란드	6.6		
노르웨이	6.6	원 조	0.9
뉴질랜드	5.8		
아일랜드	5.7		
스페인	5.6	무 역	0.7
오스트렐리아	5.6		
오스트리아	5.5		
핀란드	5.5	투 자	5.8
캐나다	5.3		
영 국	5.1		
독 일	5.1	이 주 자	0.9
프랑스	5.1		
벨기에	5.0		
포르투갈	5.0	환 경	2.5
미 국	4.9		
그리스	4.4		
이탈리아	4.4	안 전	1.9
스위스	4.2		
일 본	3.1	기 술	6.6
한 국	2.8		

자료: http://www.cgdev.org/section/initiatives/_active/cdi/

이제 한국은 개인소득 연간 20,000 달러를 넘어서는 잘 사는 나라이다. UN과 세계은행은 1만 달러 이상이면 잘사는 나라로 분류한다. 그리고 세계 70억 인류 중에 불과 10억 정도만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국민소득 500 달러 내외의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은 외국인근로자들, 결혼이민자들, 난민 그리고 새터민들을 잘 보살피고 지원하는 일은 퍼주기가 아니라 인류의 일원으로서 도덕적인 의무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도리이다.[22)]

한국 내 아세안 출신 근로자가 14만 명이고 해마다 외국을 여행하는 1,000만 명 가운데 700만 명은 아세 안 국가를 방문한다.

정부는 2009년 3월 17일 '국가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22) 2006년의 경우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흘러간 송금액이 적어도 2600억 달러에 달했다. 이 정도면 선진국들의 후진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나 원조 규모(2004년 도 약 1400억 달러-DAC통계)의 합계보다도 많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이다.

로 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국임에도 국가브랜드지수는 33위에 머물러 한국 상품의 가치가 30% 저평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5대 중점분야 10개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그 8번에 '따뜻한 다문화 사회 만들기'를 넣었다. 또한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저 평가 되는 이유 다섯 가지 중 첫 번째와 네 번째로 국제사회 기여도 미흡과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 부족과 외국인에 대한 배려의 부족을 들었다. 23)

< 지역별 수출 비중 추이(%) >

(2010년 미국+일본+EU= 28.2%. 중국+ASEAN 등= 53.2%)

	'09	'10	'10.11	'10.12	'11.1	'10.2.1~20	'11.2.1~20
中 國	23.9	25.1	25.7	25.1	22.9	25.2	25.9
美 國	10.4	10.7	10.8	9.9	9.3	9.8	12.7
日 本	6.0	6.0	6.7	6.1	6.6	6.3	7.3
E U	12.8	11.5	10.3	11.7	14.0	10.0	9.6
ASEAN	11.3	11.4	12.0	11.1	11.6	11.5	13.4
中 東	6.6	6.1	6.0	6.9	6.4	4.8	5.2
중남미	7.3	7.7	5.9	6.3	9.2	9.0	5.5
대양주	4.5	2.9	2.1	4.3	2.2	4.5	2.1

자료: 지식경제부 '2011년 2월 수출입동향'

우리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발전국가이다. 그런데 상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지역별 수출 비중 추이를 보면 미국, EU, 일본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28,2%인 반면 중국, ASEAN, 중동, 중남미 등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53,2%로 거의 두 배에 이른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의 중요한 우방이 누군가는 명백하다. 어쩌면 우리가 이들 국가들과 보다 튼튼한 외교 통상 관계를 맺고 이들 나라 사람들과 더 끈끈한 정을 맺는 일 즉 부드러운 외교(Soft power diplomacy), 똑똑한 외교(Smart power diplomacy)가 결국에는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가는 좋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우리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함으로서 한국의 국격(國格)을 높여가는 일이 될 것이다.

23) 2009, 3, 9 청와대 보도자료. 1 국제사회 기여도 미흡. 2 글로벌 시민의식 부족. 3 거주・관광지 매력 부족. 4 다문화 포용・외국인 배려 부족. 5 낮은 대외인지도